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 정 2003. 1. 3.

개 정 2003. 9. 24. 규정 제32조의2(신설)

개 정 2004. 3. 3. 규정 제12조의2(신설), 제32조, 제34조

개 정 2020. 1. 13. 규정 제1조, 제9장 제37, 38, 39조(신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의거 조합선거 및 결의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위원장, 대의원 선거 및 총회결의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 1인
2. 선거관리위원 : 7인 이내 (간사1인 포함)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선거에 출마시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대의원, 상집위원, 부서(사업장)에서 추천한 신망 있는 조합원 중에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2. 입후보자의 등록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3. 선거인의 자격심사 및 명부작성

- 4.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 5.입후보자의 추천의 참관인 신청등록
- 6.당선자 결정 및 선거록 작성
- 7.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 8.파견, 교대근무자의 투표에 관한 사항
- 9.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위원 확정공고)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20일전에 확정공고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후보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사용자 또는 조합원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금품제공 등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 2.회사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에 방해 또는 동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3.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를 했을 때
- 4.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한 행위
- 5.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으로 자유로운 선거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 6.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방해 및 기타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9조(선거중립)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사퇴)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위원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 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당선인이 확정되고 당선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자연 해산한다.

제 3 장 입 후 보 등 록

제12조(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별지3)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다음과 같이 추천인을 받아야 한다

- 1.위원장 : 조합원의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하여야 한다 (중복추천은 무효)
- 2.대의원 : 조합원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하여야 한다 (중복추천 가능)

제12조의2(동반 입후보)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사무국장과 동반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의 시기) 조합의 선거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위원장 : 임기만료 10일전 선거 해당 년 6월중 실시
- 2.대의원 : 임기만료 전 1개월 내에 실시

제14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조합의 선거권은 선거공고 일까지 조합규약 제6조, 제7조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조합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위원장 : 공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공고일 기준)
- 2.대의원 : 공사에 1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공고일 기준)

제15조 (피선거권 자격상실) 조합규약 제54조에 의거하여 선거일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제16조(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본 규정 제12조,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 등

록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단, 심사결과 본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수정되지 않을 시 등록을 취소한다.)

제17조(입후보자 사퇴) ①입후보등록을 필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사퇴를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 한 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입회 하에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18조(후보자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인 명 부

제19조(명부작성 및 열람) 선거인명부는 선거개시일 10일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고 열람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내에 구면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5일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제시 및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기간) 당해 선거 입후보자는 본규정 제16조에 의거 확정된 후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의 제약) ①위원장 및 대의원 후보는 홍보물을(대자보, 유인물, 포스터 등) 배포하기 전에 원본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얻어 후 배포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사용자또는조합원외의지원을받거나폭력,공갈,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2.경쟁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조합원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
- 3.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4.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게시물 게재 및 유포행위
- 5.조합의 선거관련 게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 6.기타 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5조(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선전벽보 및 유인물의 크기와 종류, 연설회 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의규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규약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뢰할 수 있고, 선거당일 선거인에게 보고하여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일과 투·개표

제27조(투표장소 및 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정하며 투표시간은 투표당일로 하되 그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28조(기표방법) 선거인은 기표시 지정된 도구로 ‘○’표 하여야 한다.

제29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의 의견을 들어 결정. 제작한다.

제30조(투·개표 참관) ①투·개표 과정 및 발표시까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중에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하며, 당선인 결정 후 자연 해산하며, 그 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후보자는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전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질문 하거나 기타 투·개표 또는 투·개표 사무를 방해, 간섭 및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1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어느 란에도 기표를 아니한 것
- 3.두개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6.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 7 장 당 선 인

제32조(당선인의 결정) 선거인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유효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결선투표(2차)에서는 과반수이상 투표에 다수 득표를 한 자를 확정한다 단, 단독 입후보할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유효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의2(무투표당선) 대의원 선거시 해당 부서별 배정된 인원 이내로 대의원입후보자가 등록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제반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33조(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장 제외

- 1.후보자가 없거나 이 규정 32조의 당선인이 없을 때
- 2.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게 될 때
- 3.당선인이 임기만료전 사퇴 또는 해임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4.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이 내에 이를 실시한다.
단, 위원장 잔여기간 3개월, 대의원 2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8 장 선거 이의 신청

제35조(선거 이의)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한다.

②선거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처리 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당선 이의)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결과를 선관위는 검토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의사결정

제37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장 선거
2. 대의원 선거
3. 총회 결의
4. 그 밖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제39조(전자적 방법 본인확인 및 알림) ① 조합원은 제3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선거관리규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부 칙)

제1조(개 폐)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준 용)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별지 1]

선 거 공 고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 | | |
|-----------|------------|
| 1. 선거구분 : | 2. 선출정원수 : |
| 3. 투표일시 : | 4. 투표장소 : |
| 5. 개표일시 : | 6. 개표장소 : |
| 7. 기타사항 | |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2]

후 보 등 록 공 고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선거 입후
보 등록을 공고함.

○ 입후보 등록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구비서류 :
- 1) 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이력서 1부
 - 3) 후보 추천서 1부(소정양식)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3]

입 후 보 등 록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명		근 무 처	
입 사 일		조합가입일	
주 소			
자택전화		핸드폰	

상기 본인은 금번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선거에()으로
입후보 하고자 이에 추천자 명단을 첨부하여 등록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조
합 규약과 조합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년 월 일

등록자 : (인)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4]

입 후 보 추 천 서

후 보 자 명 : (인)

번 호	성 명	부 서	비 고	날 인
1				
2				
3				
4				
...				
20				

본인은 금번 조합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상기인을 입후보자로
추천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5]

입후보 등록 확인서

- . 대도노선관위 : 제 호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조합가입일 :
- . 등 록 일 :

상기인은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
거 200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대(위원장,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필하였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인)

입후보 등록 확인서

- . 대도노선관위 : 제 호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조합가입일 :
- . 등 록 일 :

상기인은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
거 200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대(위원장,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필하였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지 6]

입 후 보 자 공 고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입 후 보 자

기 호	성 명	소 속	비 고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7]

투표참관인 신청서

* 기호 : 번 후보자성명 : ○ ○ ○ (인)

상기 본인은 200 년 월 일 위원장 선거 시, 투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투표참관인

연 번	성 명	부 서	참관투표소	날 인	비 고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8]

입 후보 사 퇴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명		근 무 처	
입 사 일		조합가입일	
주 소			
자택전화		핸 드 폰	

* 후보사퇴 사유 :

상기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입후보를 사퇴코자 이에 사퇴서를 제출 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원인 (인)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9]

()선거 입후보자 사퇴 공고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 사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입 후 보 사 퇴 자

기 호	성 명	소 속	사 퇴 일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10]

() 선거 선거인 명부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연 번	성 명	부 서	날 인	비 고
1				
2				
3				

[별지 13]

위 원 장 당 선 공 고

* 기 호 : 번 성 명 :

위 조합원은 200 년 월 일에 실시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제
대 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공고함.

○ 선거인수 : 명

○ 투표인수 : 명(%)

○ 유효 표 : 표

○ 무 효 표 : 표

○ 후보별득표수

* 기호1 () : 표(%)

* 기호2 () : 표(%)

200 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제 기 (200 년도) 대의원선거 선거록

* 사업장명(부서별) :

1. 선거일정공고사항

가. 선거공고일 : 200 년 월 일

나. 선거일 : 200 년 월 일

2. 후보자 수 : 명

3. 투표에 관한 사항

가. 선거인 수 : 명

나. 투표참가인수 : 명

다. 투표율 : %

라. 투표장소 :

4. 후보자별 득표수

기 호	후보자 성명	득 표 수	득 표 율	비 고
1				
2				
3				

5. 당선자

기 호	성 명	부 서	근 무 처	직 위 (직 급)	비 고

200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